

#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재 결 서

사 건            행심2020-14호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출석정지  
5일 등』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  
피 청 구 인     □□□□고등학교장  
재 결 일 자     2020. 4. 20.

## 주 결 문

피청구인이 2020. 2.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출석정지 5일 등』  
처분을 『학교에서의 봉사 1일 2시간씩 3일간 총 6시간, 학생 및 보호  
자 부가적 특별교육이수 5시간』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20. 2.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출석정지 5일 등』  
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I. 사건개요

가. □□□□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 라고 한다)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청구인은 2019. 8. 30. ■■■고등학교 학생인 ○○○과 함께 이 사건 학교 학생인 ♡♡♡과 ●●●●고등학교 학생인 ◇◇◇(이하 ‘이 사건 피해학생’ 이라고 한다)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장소로 이들을 만나러 갔는데, 피해학생이 술병을 벽에 던지는 등 소음을 발생시켜 민원인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던 청구인 포함 학생들 모두 경찰서로 연행된 사건이 있었음. 이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인, ♡♡♡, ○○○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돈을 요구한 정황(이하 ‘이 사건 행위’ 라 한다)이 있었음.

※ 돈을 요구한 정황 관련해서 청구인과 피해학생의 주장이 엇갈림

- 청구인 : 아무 잘못도 없이 경찰서로 연행되어 간 것이 억울하여 사건 다음날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학생이 먼저 사과하는 것 대신에 돈으로 보상하겠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지 않았음.
- 피해학생 : ♡♡♡, ○○○ 학생이 전화도 하고 학교로 찾아와서 경찰서에 연행되어 간 일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 또한 이들과 함께 찾아와 돈을 주겠다는 진술을 하게 하여 녹음하였음.

나. 2020. 2. 11.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 라 한다)는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이라고 한다)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한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교육부고시 제2016-99호)에 따라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2.8점 (보통), 학교폭력의 지속성 2.1점(보통), 학교폭력의 고의성 2.6점(보통),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3점(낮음), 화해 정도 3점(낮음)으로 판정하여 그 판정 점수 합계 13.5점으로 『제7호 학급교체』 조치에 해당하나, 선도 가능성이 있고 피해학생이 타학교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제17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제6호 출석정지 5일,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조치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2. 11.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

의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2. 14.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알고, 이에 불복하여 2020. 2. 2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피해학생이 먼저 경찰서로 연행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인, ♀♀♂♂, ♂♂♂ 학생에게 10만원씩 주겠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그 이후로 피해학생을 만난 적도 없고, 협박하기 위해 전화한 적도 없으나,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돈을 받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나. ♀♀♂♂ 학생은 독단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 피해학생에게 협박성 전화를 하고, 학교로도 찾아갔으며,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학생이 경찰에 신고해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가 열렸음. 이러한 협박 행위로 ♀♀♂♂ 학생은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받았는데, 직접적으로 가해하지 않은 청구인에게도 ‘출석정지 5일’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다. 피청구인은 사안조사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가해한 학생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으며, 청구인의 진술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금전적인 이야기가 오갔다는 내용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내렸기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해학생이 먼저 돈을 주겠다고 했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 피해 학생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 ♡♡♡, ◎◎◎ 학생이 먼저 같이 연행되어 간 것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요구했고, ♡♡♡ 학생은 사건 이후 꾸준히 돈을 줄 것을 강요했고, 청구인은 피해학생으로부터 돈을 주겠다고는 진술을 하게 하여 녹음했다고 함. 또한, 학생으로서 10만원씩 3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먼저 주겠다고 한 것을 납득하기 어려웠고, ♡♡♡ 학생은 자신이 먼저 돈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했는데,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청구인만 피해학생이 먼저 돈을 주겠다고 했음을 주장하고 있음. 이에 피청구인은 지난 8월부터 있었던 일에 대한 보상으로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인 금전 요구가 있었고, 이는 피해학생에게 장기간 심리적 압박을 주었을 거라 판단하였음.

나. 직접적으로 가해한 ♡♡♡ 학생과 똑같이 청구인에게 ‘출석정지 5일’ 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학생의 진술이 상세하고 일관된 것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에 사실을 부정하였기에 화해나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판정점수를 매긴 결과 ‘학급교체’ 조치가 나왔으나, 피해학생이 타학교 학생이고 청구인이 학교생활을 잘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처분을 감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임.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2. 인정되는 기초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청구인의 진술서, 관련 학생들의 진술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리인의 구술심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 ♡♡♡, ◇◇◇ 등은 2019. 8. 30. 있었던 음주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서에 출석했다가 훈방되었고, 그 후 청구인, ○○○, ♡♡♡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과 ○○○, ♡♡♡, ◇◇◇은 ■■■체육공원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과 ◇◇◇이 서로 폭행을 하면서 다투었다.

다. 청구인과 같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은 위 사건으로 학폭위로부터 출석정지 5일 등의 조치를 받았고, 그 이후 청구인이 학폭위로부터 『제6호 출석정지 5일 등』 조치를 받았다.

## 3. 이 사건 처분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

같,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 및 ○○○○, △△△이 경찰서에 출석한 사건과 관련하여 ◇◇◇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돈을 요구한 행위는 위 학교폭력예방법 규정의 ‘강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이 사건 조치의 적절성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 같은 조치인 『출석정지 5일,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행위를 △△△의 행위와 비교하면 청구인은 가담의 정도가 약하고, 돈을 요구한 행위도 다른 가해자들에 비하여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조치는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이 가담한 정도에 비하여 너무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을 감경하기로 한다.

###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는 만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